정답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	2	1	2	1	4	4	1	3	1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3	2	1	3	1	4	3	4	3	3

해설

1. 정답 1번
1번 지문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들의 취지는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정답 2번
2번 지문
행정절차법의 조문의 숙지여부를 묻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3. 정답 1번
1번 지문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정답 2번
2번 지문
행정쟁송법 제22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5. 정답 1번
1번 지문
통설적 입장에 따르면 행정지도를 따를 것인지가 상대방의 임의적 결정에 달려 있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는 것이 통설적인 입장이다.

6. 정답 4번
4번 지문
해당 사례문항은 이하 판례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구성한 사례 문항이다.
해당 판례의 숙지를 통하여 사례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판례는 부담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담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7. 정답 4번
4번 지문
공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비권력적 행정영역에서는 의사합치를 요소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의 개념에 비추어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해질 수 있음은 당연하며 다수설의 태도이다. 권력적 행정영역에서도 법률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공법상 계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8. 정답 1번
1번 지문
독자적인 판단여지론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항이다.
판단여지를 재량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념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학설의 대립을 묻는 문항이다.
판단여지는 법률이 의도하는 하나의 올바른 결정을 위한 법인식의 문제인 반면, 효과규정에서 논의되는 재량은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행위의 결정 선택의 문제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 되므로 독자적인 개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9. 정답 3번
3번 지문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참조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10. 정답 1번
1번 지문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6헌가4 결정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11. 정답 3번
3번 지문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

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12. 정답 2번
2번 지문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3. 정답 1번
1번 지문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에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14. 정답 3번
3번 지문
대판 1994.10.28. 94누5144
계고란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15. 정답 1번
1번 지문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9 판결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16. 정답 4번
4번 지문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 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17. 정답 3번
3번 지문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172(병합)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서, '공공필요'의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8. 정답 4번
4번 지문
소송법상의 처분 개념과 학문상의 행정행위의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에 관해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일원설, 양자를 다르게 이해하는 이원설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원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처분 개념이 행정행위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본다.

19. 정답 3번
3번 지문
소송법상의 처분 개념과 학문상의 행정행위의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에 관해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일원설, 양자를 다르게 이해하는 이원설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원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처분 개념이 행정행위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본다.

20. 정답 3번
3번 지문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총평

난이도 □ 매우 어려웠다. □ 다소 어려웠다. ■ 평이했다. □ 다소 쉬웠다. □ 매우 쉬웠다.

총평

1.들어가는 말

문제가 어렵든 쉬웠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조정점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 두 달 뒤에 서울시와 지방직을 봐야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의 난이도나 오답의 개수 보다는 정확한 지문분석을 통하여 추후 있을 지방직 서울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2.출제의 형태

1)사례형문제

사례가 2문항 출제 되었으나 기본개념이나 판례를 숙지하고 있다면 무난하게 풀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이었다고 판단된다. 통상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들과 비교할 때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

2)학설

단순한 판례의 숙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아닌 학설의 대립을 통한 결론 도출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바 몇몇 문제는 기본 개념과 법적성격에 관하여 정확한 숙지가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으며, 순수 학설의 문제이더라도 소거 형으로 다른 번호의 판례의 정오 선택을 분명히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이었다. 학설에 대하여 큰 고민하기보다는 기본 개념의 정립과 판례의 정확한 암기로 소거 형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사안이다.

3. 상세 해설 및 지방직 대비 판례특강의 진행

4/10일 월요일 노량진 지안공무원학원 201호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8시간 동안 해당 기출 문제 분석 및 지방직 대비 엄선 판례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해당 특강을 통하여 이번 기출을 분석해보고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여보도록하자.